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1
----------	-------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의자 :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김병관 · 안규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보건교육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별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여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별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등).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생 략)  <u>&lt;신 설&gt;</u>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
<u>&lt;신 설&gt;</u>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lt;신 설&gt;</u>	第31條의2(罰則) ----- ----- ----- -----. 1. ~ 3. (현행과 같음) <u>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자</u>

또는 이를 알선한 자